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06

발의연월일: 2022. 3. 18.

발 의 자: 조해진·강대식·강민국

金炳旭・김성원・김영배

박성민 • 박수영 • 정점식

추경호 · 하태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 대통령 사전투표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 과정에서 선거 관리 전반에 심각한 관리부실이 드러났음.

이에 투표소에 확진자를 위한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위한 투표함을 설치하려고 함.

또한, 현 공직선거 사무 수행을 보조하는 선거사무원등 선거사무관 계자의 수당 규정은 27년 전인 1994년에 결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음.

이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현실화 하도록 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 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제135조제2항 및 제147 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35조에 따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항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인상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과선거사무장등의 수(선거사무원의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별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최대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의 수당은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수당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선거

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14만원 이내
-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 선거의 시·도선거연락소장: 14만원 이내
-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
-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
- 5.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6만원 이내
- 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 인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해 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1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만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라 투표시간을 보장받은 사람 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별도로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15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라 투표시간을 보장받은 사람 등이 선거권을 행

사할 수 있도록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7조제2항 중 "投票用紙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를 "投票用紙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일 당일 투표소 현장 에서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압날한 후"으로 한다.

제158조제3항 중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를 "투표소 현장에서 사인날 인란에 사인을 압날한 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 ①・② (생 략) | ①・②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③ 제135조에 따른 선거사무장 |
| |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
| |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항에서 |
| |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게 |
| |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인상된 |
| |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 선거 |
| | 의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사무장 |
| | 등의 수(선거사무원의 경우에 |
| | 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별 |
| | 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 |
| | 소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
| | 의 최대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
| | 산정한 금액을 제1항 및 제2항 |
| | 에 따라 산정한 선거비용제한 |
| | <u>액에 가산하여야 한다.</u> |
| ③ (생 략) |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
|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
| 수당과 실비보상) ① (생 략) | 수당과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 |
| | <u>o</u>) |
| ②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 |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ㆍ |
| 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ㆍ |

가 정한다.

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 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수당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회 계책임자의 수당은 해당 회계책 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수당과 같은 금 액으로 하고, 같은 사람이 회계 책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 소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 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14만원 이내
-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도선거연락 소장: 14만원 이내
-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 구·시·군의 장선거의 선거 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도 지사선거의 구·시·군선거연 락소장: 10만원 이내
-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

③ (생략) <신 설>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읍 • |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 안의 투 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하다.

② ~ ① (생 략) 성) ① (생략)

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 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의 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 5.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6만 원 이내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 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 무장등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에는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1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 --. 다만, 제6조의3에 따라 투표 시간을 보장받은 사람 등이 선 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별도 로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② ~ ① (현행과 같음)
-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 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하나의 選擧에 관한 投票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投票函을 사용할 수 없다.

③ ~ ⑨ (생 략)

-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 차) ① (생 략)
 - ② 투표관리관은 選擧日에 選擧 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는 때 에는 私印捺印欄에 私印을 捺印 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 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 0枚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私印 을 미리 捺印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③ ~ ⑧ (생 략)
- 제158조(사전투표) ①・② (생 략)

-----. 다만, 제6조의3에 따 라 투표시간을 보장받은 사람 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 록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 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 다.

- ③ ~ ⑨ (현행과 같음)
-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 차) ① (현행과 같음)
- ② 투표관리관은 選擧日에 選擧 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는 때 에는 투표일 당일 투표소 현장 에서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압날 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 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 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 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 부할 수 있다.
 - ③ ~ ⑧ (현행과 같음)
- 제158조(사전투표) ① ② (현행 과 같음)
-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 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 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 ⑧ (생 략)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사전투표관리관"칸에 투표소 현장에서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압날한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 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 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